

## 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위솔자산운용(주)

2. 제재조치일 : 2026. 5. 27.

3. 제재조치내용

| 제재대상 | 제재내용   |
|------|--|
| 기 관  | · 기관주의   |
| 임 원  | · 주의적 경고 1명, 주의 2명,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주의 상당) 3명<br>· 과태료(15.8백만원) 부과(3명) |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(1) 집합투자증권 발행 시 적격투자자 요건 위반

□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적격투자자에 한하여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○ 그러나 위솔자산운용(주)가 2023.○.○. Z펀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, 위솔자산운용(주) 대표이사 甲은 乙, 丙 등 총 6인으로부터 총 0억원을 투자받아 자신의 돈 0원을 합하여, 자신이 혼자 0억원을 투자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본인 명의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였다.

○ 또한 투자금 납입 이후에도 乙, 丁 등 일부 투자자의 상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0억원의 투자금액을 유지하였고, 매 분기 펀드로부터 받은 배당금 전액을 각 투자자별 투자금액 및 기간으로 일할계산하여 배당하였다.

< 관련 규정 >

1. 「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49조의2 제2호
2. 「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49조의7 제1항
3. 「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71조 제2항 제2호

**(2)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**

□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.

- 위솔자산운용(주) 비상무이사 丙은 2023.○.○.~2024.○.○.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계좌를 이용하여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로 매매사실 등 매매명세를 위솔자산운용(주)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.

< 관련 규정 >

1. 「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제1항 제3호

**(3)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**

□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.

- 그러나 위솔자산운용(주) 대표이사 甲은 2022.12.1.(위솔자산운용(주)의 금융투자업 등록일) 부터 2024.○.○.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위솔자산운용(주) 상근 임원으로 재직하면서, 영리법인인 E로부터 사실상 급여를 받으면서 E 명의의 자문보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.
- 한편 위솔자산운용(주) 상무 丁은 2022.12.1.(위솔자산운용(주)의 금융투자업 등록일) 부터 2023.○.○.까지 위솔자산운용(주) 상근 임원으로 재직하면서, F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를 관리하고, G의 등기이사로서 소속 시설관리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2개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.

< 관련 규정 >

1.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제1항